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규칙

소관부서 : 자치경찰총괄과[2022. 12. 19. 시행]

(제정) 2021. 9. 27.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훈령 제6호
(일부개정) 2022. 12. 19.
관리책임부서 :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부서 연락처 : 055)211-09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 감사의뢰 및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요구·징계요구 등의 기준과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사무기구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상남도경찰청(이하 “경남경찰청” 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감사대상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의 소관사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대상 사무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와 주기) ①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로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

다. 다만,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실시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을 준용하며 특정·재무·성과감사의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며,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효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감사단의 편성) ① 위원회는 감사목적 달성과 감사성과 확보를 위해 감사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을 편성할 때에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 다만, 경찰청 또는 경남경찰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감사단장을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나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편성할 수 있다.

제7조(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감사단장, 감사공무원, 업무담당자나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 감사계획,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위원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전보·수당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절차)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단장이 감사의 종류 및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사개요 통보 :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한다.
2. 감사의 실시 : 감사담당자는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3. 감사의 종결 :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감사결과의 설명 : 감사단장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경위서·진술서, 증빙서 또는 확인서 제출과 문답서 작성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감사단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감사단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2.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고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4.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현지조치 : 감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감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단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단장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상남도경찰청장(이하 “경남경찰청장”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

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경남경찰청장을 거쳐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정 2022.12.19.>

제14조(감사의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다수의 시·도에 걸쳐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자치경찰사무만을 감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감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감찰요구)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 비위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찰을 요구받은 경남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요구)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남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경남경찰청장에게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처분심의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11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에 관련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감사의뢰 처리에 관련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감찰요구 처리에 관련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징계요구 처리에 관련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처리에 관련한 사항
6. 제22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처리에 관련한 사항 <신설 2022.12.19.>
7. 감사결과 공개에 관련한 사항
8. 그 밖에 감사처분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이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이 있는 감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변경·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표창추천)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1조에 따른 처리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 등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결과 처리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의 불이익한 처분(요구)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② <삭제 2022.12.19.>
- ③ <삭제 2022.12.19.>
- ④ <삭제 2022.12.19.>
- ⑤ <삭제 2022.12.19.>

제21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본조신설 2022.12.19.>)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제22조(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등 <본조신설 2022.12.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희망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이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이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할 경우
- ② 위원회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를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에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비위내용이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적극행정 면책심사 <본조신설 2022.12.19.>)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7조의 감사처분심의회에 따른다.

② 심의회는 위원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의결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심사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④ 위원, 간사 및 참석자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적극행정 면책심사 결과의 처리 <본조신설 2022.12.19.>)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따른 심의회는 심사결과를 감사결과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본조신설 2022.12.19.>) 위원회는 감사에 착수 또는 종료할 때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 대상자에게 면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상호협조 <개정 2022.12.19.>) ① 위원회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감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청장 및 경남경찰청장과 상호 협조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 또는 경남경찰청과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9. 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규칙의 시행일 현재 감사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확 인 서

제 목 : _____

1. 현황(업무개요)
2. 관계법령
3. 위법부당사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계급) 성명 (인)

【확인자 의견】

【관련자 조서】

책임구분	소속 및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명 (생년월일)	관련기간	확인
	행위시	현재			

문 답 서

1. 주 소 :
2. 소 속 :
3. 직급 또는 계급 :
4.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_____ 사건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_____ 에서
감사관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답 :

----- 중간 생략 -----

문 :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이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한다.

년 월 일

진술자 : 소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인)
감사자 : 소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인)
입회자 : 소속	직위(직급 또는 계급)	성명	(인)

감사처분심의회 심의안건

1. 감사대상 :

2. 감사기간 :

3. 감 사 단

○ 감사단장

○ 감사단원

4. 지적건명 및 처분

일련 번호	중점 분야	처분 종류	제 목	금액 (인원)	감사자

붙임 처분안 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처분심의회 의결서

심의일시		참석위원수			
심의장소		불참위원수			
심의안건					
심의의결	붙임 ‘심의결과’ 와 같이 의결함				
<p>■ 처분심의회 참석위원</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					
〃					
〃					
〃					
간 사					
비 고	붙임 : 감사결과 처분(안) 심의 결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경찰청장

제목 : 감사의뢰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사를 의뢰합니다.

감사의뢰의 내용	
감사의뢰 사유	
의뢰기관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관계 자료 목록	1. 관계 법령 2. 해당 업무 세부자료 등

(심의·의결일)

년 월 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직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경상남도경찰청장

제목 : 감찰요구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찰을 요구합니다.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위 요지			
감찰요구 사유			
관계 자료 목록	1. 내용 기재 2. 내용 기재		

(심의·의결일)

년 월 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직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제 0000-00000 호

0000.00.00.

수신 : 경상남도경찰청장

제목 : 징계요구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대상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비위 요지			
징계 절차 진행 요구 사유			
관계 자료 목록	1. 관련 언론 보도 1부. 2. 적발 보고서 1부. 3. 감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심의·의결일) 년 월 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직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제 목		
감사지적 요지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 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귀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

감사단장(책임자) : 직급·성명 (서명 또는 인)

일련번호		감사명		대상기관	
대상자 인적사항					
제 목				감 사 자	
감사지적 요 지					
적극행정면책 신청요지					
면책요건별 검토의견					
면책신청 구체적 판단기준		면책요건 해당여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종합의견					

면책심사신청 안내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사를 받은 자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공무원의 소속부서장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기준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